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13

인 천 지 방 법 원

제 1 -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2구합50872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 고	1. 주식회사 A 2.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 담당변호사 ○○○
피 고	○○○○시 ○○구청장
변 론 종 결	2022. 7. 14.
판 결 선 고	2022. 8. 11.

주 문

1. 피고가 2021. 5. 10.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29,605,020원, 지방교육세 1,809,180원, 농어촌특별세 1,866,340원 합계 41,000,14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13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은 2019. 10. 10. ○○○○시 ○○구 C 대 1126㎡ 위에 건물(지하 3층, 지상 18층 연면적 13,861.521㎡)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신축하고 공동명의로[1] 이를 취득하였다. 원고들은 2019. 10. 15.경 피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12,754,494,0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취득세 367,329,420원, 농어촌특별세 23,157,740원, 지방교육세 22,447,900원 합계 412,935,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.

【표1】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

(단위: 원)

납세자	과세표준	납부세액	취득세	농특세	지방교육세	취득세율 적용
A (지분19/20)	12,116,769,319	380,656,230	339,269,540	21,999,860	19,386,830	○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- 표준세율(2.8%)
B (지분1/20)	637,724,701	32,278,830	28,059,880	1,157,880	3,061,070	○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- 중과세율(4.4%)
합계	12,754,494,020	412,935,060	367,329,420	23,157,740	22,447,900	

나. 피고는 2021. 3.경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, 원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건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재료비 매입 부가가치세 425,570,263원과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682,946,434원 합계 1,108,516,697원(이하 '이 사건 부가가치세'라고 한다)을 원고들이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, 2021. 3. 22. 원고들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.

다. 피고는 2021. 5. 10.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취

1) 원고 주식회사 A(이하 '원고 A'이라 한다)의 지분 19/20, 원고 주식회사 B(이하 '원고 B'이라 한다)의 지분 1/20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13

득세 과세표준을 13,782,446,440원으로 경정하고, 누락 과세표준액 1,027,952,420원에 대해 소유지분별로 과세표준액을 안분하여 할당한 후 아래 도표와 같이 취득세 29,605,020원, 농어촌특별세 1,866,340원, 지방교육세 1,809,180원 합계 41,000,140원(가산세 7,719,600원 포함)을 부과·고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【표2】 취득세 등 부과·고지 내역

(단위: 원)

납세자	누락 과세표준	합계	취득세	농특세	지방 교육세	가산세	취득세율 적용
A (지분19/20)	976,554,799	37,800,490	27,343,530	1,773,030	1,562,480	7,121,450	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- 표준세율 (2.8%)
B (지분1/20)	51,397,621	3,199,650	2,261,490	93,310	246,700	598,150	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- 중과세율 (4.4%)
합계	1,027,952,420	41,000,140	29,605,020	1,866,340	1,809,180	7,719,600	

라.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. 7. 14.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이 2021. 12. 8.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, 원고들이 그 무렵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부터 4호증,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주장

가. 원고 A에 대한 부분

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공사대금 12,591,518,820원(부가가치세, 별도)으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13

로 정하여 원고 B에게 일괄 도급하였고, 원고 B이 시공사로 위 건물을 완공하였다.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시공사인 원고 B이 위 건물을 시공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로서 원고 A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.

나. 원고 B에 대한 부분

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총 공사비 12,754,494,020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, 그에 따른 취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.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원고 B이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거래단계에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.

3. 관련 법령

■구 지방세법[2019. 12. 31.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]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① 취득세는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, 선박,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 양식업권, 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 회원권,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(이하 이 장에서 "부동산등"이라 한다)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.

제10조(과세표준)

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(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,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
⑤ 다음 각 호의 취득(증여·기부, 그 밖의 무상취득 및 「소득세법」 제101조제1항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3. 판결문·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13

■구 지방세법 시행령[2019. 12. 31.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]

제18조(취득가격의 범위 등)

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. 다만,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.

1.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

이하 생략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4. 부가가치세

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2. 법인장부: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·보조장·출납전표·결산서.

4. 판단

가. 구 지방세법(2019. 12. 31.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, 이하 같다)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자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(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).

그런데, 원고들이 2019. 10. 10. 이 사건 건물을 원고 A 지분 19/20, 원고 B 지분 1/20으로 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은 위 인정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, 한편 원고 A이 2018. 6. 30.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공사대금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13

12,591,518,820원(부가가치세, 별도)으로 정하여 일괄 도급하였고, 원고 B이 시공사로 위 건물을 완공한 사실, 이에 따라 원고 A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, 원고 B이 그 밖에 위 건물의 준공을 위해 필요한 남은 공사를 하면서 직접 공사비와 부담금 등 각종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지불한 사실, 원고들은 공동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원고 A이 지급한 위 공사대금과 원고 B이 직접 지급한 위 공사비 등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비 내역서에 기재하되, 다만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만을 제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, 위 내역서에서 확인되는 공사비용 12,754,494,0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,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원고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취득세 관한 신고납부하였다고 할 것이고, 달리 원고들이 위 취득세 신고납부 시 취득가격에 관하여 포함하여 할 항목을 누락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.

나. 이에 대해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9. 12. 31.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8조 제2항 제4호(이하 '이 사건 조항'이라 한다)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, 원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으므로,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취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13

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원고 B이 원고 A과의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이거나 재료비 매입 과정에서 지급한 부가가치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위 각 증거 및 을 제7,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.

그러나 위 부가가치세는 피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취득자의 지위에서 부담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, 원고 B이 시공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할 수 없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점, 원고 B이 위와 같이 부담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원고 A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특성상 충분히 예상되고, 위 각 증거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, 원고들은 건축주의 지위에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최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고, 이로써 거래 전 각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세가 전가되어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, 만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들이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, 이 사건 조항이 취득 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과 필연적으로 모순되게 되는 점 등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소결

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13

5. 결론

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